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2019.05.22.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회원 간의 연대 및 상호 존중의 이룩, 학내 구성원의 권리 실현과 자치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1. 본회의 회원은 본교 서울캠퍼스의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부)의 학생회의 회원으로 한다.
2. 2019년 2월부터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의 학부생이 모두 졸업하였으므로 회원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부)는 공공인재학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문헌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복지학부,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국제학과로 한다.
4. 전공개방모집으로 입학한 인원(또는 가전공을 배정받은 인원)은 전공 확정 이전까지 진입전공(또는 가배정) 해당 학과(부)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5. 각 학과(부)에서 학생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등의 학생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거나, 재학생 중 모두가 학생 대표자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본 단위의 의결권은 해당 학기에 한해 사라진다.

제4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단대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5조(권한)

1.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2.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까지로 한다.

##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의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징계자의 경우, <1> 재학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받음.  
<2> 당사자가 요청하여,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  
두 조항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제8조(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제반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부학생회장 또는 집행부가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 제9조(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제3장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1조(구성)

1.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운영위원회 및 단대학생대표자 회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즉시 학생총회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

제1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3조(의결)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5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권한)

1.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학생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또는 집행부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4장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제15조(지위)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 제16조(구성)

1.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부학생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과 각 학과(부) 학년 정대표로 구성된다.
2. 대표자 궐위(사고) 시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3.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학과(부)운영위원회(이하 과운위)의 동의를 얻어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 제17조(소집)

1. 정기 단학대회는 매 학기 중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4. 정기 단학대회는 소집 7일전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의결) 재적 대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 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총회 소집 및 요구권
2. 본회 활동의 총 노선과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부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
3.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
4. 학생회칙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
5. 학교 당국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전반에 대한 제정 및 의결권
6.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제20조(탄핵권)

1.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2.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21조(안건상정) 단학대회의 안건은 의장, 운영위원 1/3 이상, 재적 대표자 1/4 이상의 발의 시 개최 3일 전까지 상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세칙 자격)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3조(대회 회의록)

1.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은 본회의 집행부 1인이 작성하고 단학대회 이후 공개되어야 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정,부학생회장과 각 학과(부)의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시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단, 각 학과(부)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제26조(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 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리인에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 규칙은 해당 운영위원회 합의로 정한다.

제28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2. 단학대회의 소집 요구권
3. 각 집행국장의 임명 동의권 및 출석 요구권
4.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특별기구 구성권
6.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7.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 발의권
8.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권
9. 학교 당국에 대한 교섭권
10.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 제6장 정,부학생회장

제29조(지위) 정,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대표한다.

제30조(선출)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운데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1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회계 연도와 같다.

제32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1.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2. 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정,부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외 연합 기구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 정,부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과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6. 정,부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장 집행부

제34조(지위)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인 정책단위이자 집행단위이다.

제35조(구성)

1. 집행부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단학대회 때 인준을 받는다.

2.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국원을 둘 수 있다.

#### 제36조(선출)

1. 집행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인준을 받아 단학대회에서 고를 한다.
2.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특별부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시적인 집행국 이외의 집행부서와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 제8장 학과(부) 학생회

#### 제38조(구성 및 운영)

1. 학과(부)의 구성 및 운영은 각 학과(부)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 제9장 선거

제39조(시행)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

제40조(개정)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10장 재정

제4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사업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예·결산 공고) 본회의 예·결산 공고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

#### 제43조(예산편성)

1. 본회의 예산은 사무국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단학대회 심의, 인준을 받는다.
2. 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예산안의 10% 범위에서 경상비를 지출한다.

#### 제44조(결산보고)

1. 본회의 결산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매월 말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산보고서를 공고한다.
3.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사무국은 재정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5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기된 매년 정기적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구성) 구성원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되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28조 (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48조(소집과 의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26조와 제27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 제12장 비상대책위원장

제49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50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6장(사회과학대학 정,부학생회장)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1조(선출)

1.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들 중 한 명으로 구성된다.
2.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제일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단, 제일 많은 득표한 후보의 득표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넘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 제13장 학생회칙 개정

제52조(제안)

1.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학대회에 제안할 수 있다.
2. 학생회칙 개정안은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단학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공고) 단학대회의 의장은 회칙 개정안을 적어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결)

1.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55조(공포)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장 예산자치제**

제56조(예산자치제 규정) 예산 자치제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예산자치제 규정에 따른다.

## **제15장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제57조(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규정에 따른다.

## **제16장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

제58조(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에 준하며 세부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회칙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며 3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